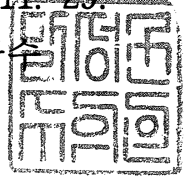


2019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

의안 번호	1773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19. 11. 29.

제 출 자 : 달성군



1. 제안이유

재정안정화기금에 4회 추경 시 발생한 일반회계 여유재원을 적립하여 세입이 부족한 해에 사용함으로써 계획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2019년도 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(안)

- 2019년도 제4회 추경 시 발생한 일반회계 여유재원을 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으로 적립
- 기금운용계획변경(안)

(단위:천원)

구 분	2018년도말 조성액 (A)	2019년도 조성계획			2019년도말 조성액 (E=A+D)
		수입(B)	지출(C)	증 감 (D=B-C)	
당 초	-	5,300,000	-	5,300,000	5,300,000
변 경	-	36,300,000	-	36,300,000	36,300,000

- 수입내역

(단위:천원)

항 목	구 분	경 정	기 정	증 감
	수 입 총 계	36,300,000	5,300,000	31,000,000
기타회계전입금 (721-03)	일반회계 전입금	36,300,000	5,300,000	31,000,000

－ 지출내역

(단위:천원)

항 목	구 분	경 정	기 정	증 감
	지 출 총 계	36,300,000	5,300,000	31,000,000
예치금 (602-01)	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	36,300,000	5,300,000	31,000,000

3. 근거법령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3조(기금운용 심의위원회)
-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및 설치 조례」 제6조(기금의 운용심의)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

제13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2.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
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제6조(기금의 운용심의) ①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달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다만, 위원회 관리·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회 조례」에 따른 달성군재정계획심의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
2.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
3.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
4. 그 밖에 군수가 기금의 관리·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